

☆ 동 설명자료는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 정보 입력 방법과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록한 자료입니다.

품목제조보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 · 관리 요령

2023. 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참고사항]

1. 동 설명자료는 '23년 7월 1일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 정보 입력이 의무화됨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등에게 올바른 영양성분 정보 입력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2. 동 설명자료는 '23년 8월 25일 기준의 관련 법규와 시스템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후 수정·보완 될 수 있음
3. 품목제조보고 시점에 입력하는 정보와 유통제품의 표시정보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처분 대상(표시정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4.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아니나* 업체에서 영양성분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급적 영양성분 정보 제공을 권장하며, 제도 시행('23.7.1.) 이전에 보고된 식품 등도 영양성분 정보 등록을 권장함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떨어져 판매하는 식품 등([참고 5]의 2)

[영양성분 정보 입력 시스템]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 우측 상단 “우리회사 안전관리” 로그인

※ 본 설명자료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43-719-2267

- 팩스번호 : 043-719-2250

☐☐ 목 차 ☐☐

1. 영양성분 정보 등록 개요	1
2. 영양성분 정보 등록	2
2.1. 등록 절차 흐름도	2
2.2. 영양성분 정보 등록 방법	3
2.2.1.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3
2.2.2.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8
2.2.3.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3. 영양성분 정보 변경	14
3.1. 변경 절차 흐름도	14
3.2. 영양성분 정보 변경 방법	15
3.2.1. 영양표시 대상 식품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	15
3.2.2. 영양성분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18
3.2.3. 제도 시행(2023.7.1.) 이전에 품목제조보고한 식품이나, 영양성분 정보의 등록을 원하는 경우	20

[참고]	21
1.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21
2. 축산물 품목제조보고서	23
3. 식품안전나라 품목제조보고 입력 화면 안내	25
4. 영양표시 대상 식품	26
5.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시행일 조정	30
6. 영양성분 종류 및 단위	31
7. 등록 예시	34
8. 변경 예시	38
[질의응답]	40

1. 영양성분 정보 등록 개요

1.1. 운영 목적

- 중요성이 높은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에 기여

1.2. 적용 대상

- '23년 7월 1일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1.3.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품목제조보고서)

1.4. 대상 식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 등

1.5. 대상 영양성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에 따라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및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한 영양성분

1.6. 적용일자

- 2023년 7월 1일 ~

1.7. 관련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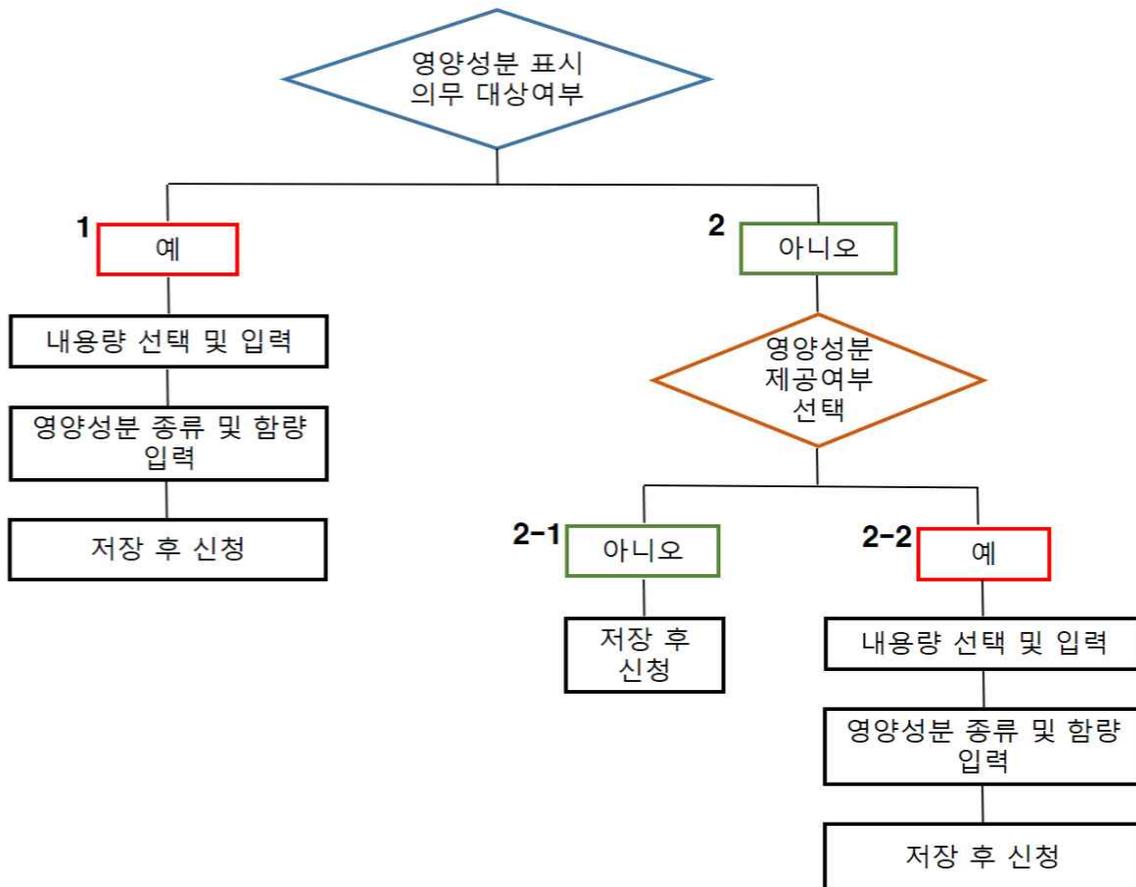
-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통합식품안전정보망)*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우리회사 안전관리
- (지자체) 시도 새올 행정시스템

2. 영양성분 정보 등록

개 요

- ◆ '23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품목제조보고하는 식품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영양표시 대상 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정보를 등록
- ※ 떡류 등 추가 61품목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영양표시 시행일이 다르므로 품목별로 대상 여부 확인 후 등록 ([참고 4] 및 [참고 5])

2.1. 등록 절차 흐름도



- ※ '1'에 해당 → 2.2.1.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 '2-1'에 해당 → 2.2.2.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2'에 해당 → 2.2.3.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2. 영양성분 정보 등록 방법

2.2.1.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① ‘품목제조기본정보’ 탭에서 ‘식품유형’ 선택

② 선택한 식품유형이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품목제조상세정보’ 탭 -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로 자동 표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 [참고 4])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1. 저목에 따라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 하는 식품 및 축산물도 영양성분 정보를 등록

- 식품유형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되나, 현재 기준으로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참고 4] 및 [참고 5]) 등은 ‘아니오’로 직접 수정

<화면>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시군구) ※ 식약처에서 진행되는 민원 상태만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접수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상세정보 영양성분 첨부서류 품목제조 불러오기 미리보기 신청 저장

품목제조 기본정보

자주하는 문의

식품유형 과자 ※ 고열량/저열량 식품유형의 경우 [고열량,저열량 식품 해당여부]를 필수로 만들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제품판매용도(내외수구분) 수출용 내수용 겸용 ※ 제품판매용도를 변경하시면 원재료 리스트가 초기화됩니다.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시군구) ※ 식약처에서 진행되는 민원 상태만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접수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상세정보 영양성분 첨부서류 품목제조 불러오기 미리보기 신청 저장

품목제조 상세정보

자주하는 문의

용도용법

살균 멸균 제품의 해당 여부 살균 살균 멸균

가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예 아니오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영양성분 제공여부 ※ '아니오' 선택시에도 '영양성분 제공여부'를 체크할 경우 영양성분 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기타

③ ‘영양성분’ 탭에서 내용량 입력

- 내용량은 ㉠총 내용량당 / ㉡100g당 / ㉢100mL당 / ㉣단위 내용량당 중 1개를 선택하고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 선택) 총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영양성분 함량은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입력

(㉡ 또는 ㉢ 선택) 총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영양성분 함량은 100g(mL)을 기준으로 입력

(㉣ 선택) 단위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총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영양성분 함량은 단위 내용량을 기준으로 입력

* 조각 또는 개수로 나눌 수 있는 단위(예: 피자 1조각, 핫도그 1개 등)

【주의사항】

- 총 내용량은 필수 입력값으로, 미입력 시 다음 단계 진행 불가
- 총 내용량이 상이한 2개 이상의 제품일 경우 대표되는 1개의 제품을 자율 선택하여 영양성분 정보를 입력(최소단위로 선택하여 입력 권장)

<화면>

신청업소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상세정보
영양성분
첨부서류
품목제조 불러오기
미리보기
신청
저장

※ 참고사항

1. 영양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 제공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 품목제조보고서 정보와 유통제품의 표시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며, 표시정보 위반 등의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2. '00g(또는 mg) 미만'으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함량으로 입력 권장
3. 영양 강조 등 제품에 표시 중인 영양성분 정보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모두 입력
4. 표시의무 영양성분 이외의 영양성분도 공공데이터 제공을 원할 경우에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입력 가능

총 내용량당 100g당 100mL당 단위 내용량당
 총 내용량 g mL 단위 내용량 g mL

+ 필수영양성분

순번	영양성분명	함량	단위
1	열량	88	kcal
2	나트륨	150	mg
3	탄수화물	12	g
4	당류	1	g
5	지방	3.6	g
6	트랜스지방	0	g
7	포화지방	1.5	g
8	콜레스테롤	0	mg
9	단백질	2	g

+ 선택영양성분

순번	영양성분명	함량	단위	삭제
1	니아신 / 나이아신	0.01	mg NE	-
2	니코틴산	0.2	mg	-
3	니코틴아마이드	0.12	mg	-

영양성분추가

④ ‘영양성분’ 탭에서 영양성분 함량 입력

-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영양성분명(9종)*과 단위는 자동 표출
 -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 영양성분명의 함량 열을 한번 누르면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되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숫자만 입력 가능
- 열량, 당류, 지방 함량 입력 시 아래의 영양성분 검토 규칙을 확인 후 입력
 - ※ 당알콜, 식이섬유, 타가토스, 알룰로오스, 에리스리톨의 영양성분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 반드시 선택영양성분에서 추가하여 입력 필요

【영양성분 검토 규칙】

- 열량(kcal)=[{ 탄수화물 함량(g)-(당알콜(g) + 식이섬유(g) + 타가토스(g) + 알룰로오스(g) + 에리스리톨(g)) 함량 } × 4kcal + (당알콜 함량(g) × 2.4kcal)+ (식이섬유 함량(g) × 2kcal) + (타가토스 함량(g) × 1.5kcal) + (알룰로오스 함량(g) × 0kcal) + (에리스리톨 함량(g) × 0kcal)] + (단백질(g) × 4kcal) + (지방(g) × 9kcal)
 - * 허용오차 ±20% 이하
- 당류 함량(g) ≤ 탄수화물 함량(g)
- 지방(g) ≥ [트랜스지방(g) + 포화지방(g) + 콜레스테롤(g)*]
 - * 콜레스테롤은 mg를 g로 환산(/1,000)

- 영양성분 함량은 실제 함량을 입력, 특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는 ‘○○g(또는 mg) 미만’ 또는 ‘0’으로 표시가 가능하나, 영양성분 정보 등록 시에는 가급적 실제 함량으로 입력
- 영양강조표시 등을 위해 식품 등에 표시하는 영양성분은 선택영양성분에서 **영양성분추가** 버튼 누름, 조회창이 뜨면 영양성분명 검색(영양성분명 및 영양성분 코드로 검색 가능) 및 선택 후 함량 입력(단위 자동 표출)
- 선택영양성분은 필수영양성분 외 120종까지 선택하여 추가 가능[참고 6]
- 식품 등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이외의 영양성분도 검색하여 입력 가능

【주의사항】

-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9종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에 대해서는 1개라도 미입력 시 다음 단계 진행 불가
- 9종 필수영양성분 외에 식품 등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정보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명을 검색하여 반드시 입력 권장(단, 미입력 시에도 다음 단계로 진행 가능)
- '영양성분명'에 따라 단위가 자동 호출되므로, 단위를 확인한 후 함량 입력 필요. 특히, 콜레스테롤의 입력 단위는 mg으로 단위가 다를 경우 환산 후 입력
- 영양성분 함량은 소수점 2자리까지 숫자만 입력 가능

<화면>

신청업소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 상세정보 **영양성분** 첨부서류 품목제조 불러오기 미리보기 신청 저장

※ 참고사항
 1. 영양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 제공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 품목제조보고서 정보와 유물제출의 표시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며, 표시정보 위반 등의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2. '○○g(또는 mg) 미만'으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함량으로 입력 권장
 3. 영양 강조 등 거품에 표시 중인 영양성분 정보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모두 입력
 4. 표시의무 영양성분 이외의 영양성분도 공공데이터로 제공을 활용할 경우에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입력 가능

필수영양성분 9종은 자동 호출되므로 함량만 입력

총 내용량당 180g 180mL 단위 내용량당 180g 180mL

+ 필수영양성분				+ 선택영양성분				
순번	영양성분명	함량	단위	순번	영양성분명	함량	단위	삭제
1	열량	88	kcal	1	니아신 / 나이아신	0.01	mg NE	-
2	나트륨	150	mg	2	니코틴산	0.2	mg	-
3	탄수화물	12	g	3	니코틴아마이드	0.12	mg	-
4	당류	1	g					
5	지방	3.6	g					
6	트랜스지방	0	g					
7	포화지방	1.5	g					
8	콜레스테롤	0	mg					
9	단백질	2	g					

선택영양성분은 직접 추가 입력

신청업소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 상세정보 **영양성분** 첨부서류 품목제조 불러오기 미리보기 신청 저장

※ 참고사항
 1. 영양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 제공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 품목제조보고서 정보와 유물제출의 표시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며, 표시정보 위반 등의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2. '○○g(또는 mg) 미만'으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함량으로 입력 권장
 3. 영양 강조 등 거품에 표시 중인 영양성분 정보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모두 입력
 4. 표시의무 영양성분 이외의 영양성분도 공공데이터로 제공을 활용할 경우에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입력 가능

총 내용량당 180g 180mL 단위 내용량당 180g 180mL

+ 필수영양성분 + 선택영양성분 ① 영양성분추가

영양성분 조회 [닫기]

구분: [선택] 영양성분명: ② [입력]

영양성분코드: [입력] ③ [조회]

순번	선택	영양성분코드	영양성분명	영문명	구분	단위
1	<input type="checkbox"/>	A001	열량	Energy	일반성분	kcal
2	<input type="checkbox"/>	A002	나트륨	Sodium	일반성분	mg
3	<input type="checkbox"/>	A003	탄수화물	Carbohydrate	일반성분	g
4	<input type="checkbox"/>	A004	당류	Sugars, total	일반성분	g
5	<input type="checkbox"/>	A005	지방	Fat, total	일반성분	g
6	<input type="checkbox"/>	A006	트랜스지방	Fatty acids, total	일반성분	g
7	<input type="checkbox"/>	A007	포화지방	Fatty acids, total saturated	일반성분	g
8	<input type="checkbox"/>	A008	콜레스테롤	Cholesterol	일반성분	mg
9	<input type="checkbox"/>	A009	단백질	Protein	일반성분	g
10	<input checked="" type="checkbox"/>	B001	니아신 / 나이아신	Niacin	수용성비타민	mg NE
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B002	니코틴산	Nicotinic acid	수용성비타민	mg
12	<input checked="" type="checkbox"/>	B003	니코틴아마이드	Nicotinamide	수용성비타민	mg
13	<input type="checkbox"/>	B004	비오틴 / 바이오틴	Biotin	수용성비타민	µg
14	<input type="checkbox"/>	B005	비타민 B1 / 티아민	Vitamin B1 / Thiamin	수용성비타민	mg

④ ⑤ [선택]

⑤ 입력 완료 후 저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제출 완료

- 영양성분 정보 등 입력 후 저장 및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제출 완료
- 입력한 영양성분 함량이 영양성분 검토규칙 범위를 벗어나면 안내창이 뜨고 민원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입력한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수정 후 저장 및 신청 필요

<화면>

신청업소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상세정보 영양성분 첨부서류 품목제조 불러오기 미리보기 **신청** 저장

※ 참고사항
1. 영양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 제공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 품목제조보고서 정보와 유통제품의 표시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며, 표시정보 위반 등의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2. '○○g(또는 mg) 미만' 으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함량으로 입력 권장
3. 영양 강조 등 계통에 표시 중인 영양성분 정보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모두 입력
4. 표시의무 영양성분 이외의 영양성분도 공공데이터로 제공을 원할 경우에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입력 가능

총 내용량당 100g당 100mL당 단위 내용량당 총 내용량 180 g mL 단위 내용량 180 g mL

+ 필수영양성분 + 선택영양성분 영양성분추가

www.foodsafetykorea.go.kr 내용:
-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의 ±20% 범위를 벗어납니다.
- 당류는 탄수화물 함량보다 적거나 같아야 합니다.
- 지방은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을 합한 함량보다 많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 때 콜레스테롤은 mg을 g으로 환산한 값(/1,000)이어야 합니다.
다시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2.2.2.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① ‘품목제조기본정보’ 탭에서 ‘식품유형’ 선택
- ② 선택한 식품유형이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품목 제조상세정보’ 탭 -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니오’로 자동 표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 [참고 4])

<화면>

The screenshot displays three tabs: '품목제조기본정보' (selected), '원재료명', and '품목제조상세정보'. The '품목제조기본정보' tab shows a dropdown for '식품유형' with '심음차' selected. A red dashed box highlights this dropdown. A red arrow points from this box to the '영양성분' section in the '품목제조상세정보' tab. In this section, the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checkbox is checked, and the '아니오' radio button is selected. A red dashed box highlights this section.

- ③ 입력 완료 후 저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제출 완료

- 영양성분 정보 외 다른 정보 등 입력 후 저장 및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제출 완료(영양성분 탭의 정보 미입력)

2.2.3.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① ‘품목제조기본정보’ 탭에서 ‘식품유형’ 선택
- ② 선택한 식품유형이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품목제조 상세정보’ 탭 -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니오’로 자동 표출 → ‘아니오’ 옆의 ‘영양성분 제공여부’ 직접 선택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 [참고 4])

※ 영양성분 제공여부를 체크할 경우 영양성분 탭으로 자동 이동

<화면>

상단 화면 (품목제조기본정보 탭):

- 식품유형: 과자
- 제품명: [빈칸]
- 제품판매용도(내외수구분): 수출용 내수용 겸용

하단 화면 (품목제조상세정보 탭):

- 살균 멸균 제품의 해당 여부: 비살균 살균 멸균
-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예 아니오
-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영양성분 제공여부

③ ‘영양성분’ 탭에서 내용량 입력

- 내용량은 ㉠총 내용량당 / ㉡100g당 / ㉢100mL당 / ㉣단위 내용량당 중 1개를 선택하고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 선택) 총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영양성분 함량은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입력

(㉡ 또는 ㉢ 선택) 총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영양성분 함량은 100g(mL)을 기준으로 입력

(㉣ 선택) 단위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총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영양성분 함량은 단위 내용량을 기준으로 입력

* 조각 또는 개수로 나눌 수 있는 단위(예: 피자 1조각, 핫도그 1개 등)

【주의사항】

- 총 내용량은 필수 입력값으로, 미입력 시 다음 단계 진행 불가
- 총 내용량이 상이한 2개 이상의 제품일 경우 대표되는 1개의 제품을 자율 선택 하여 영양성분 정보를 입력(최소단위로 선택하여 입력 권장)

<화면>

신청업소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상세정보
영양성분
첨부서류
품목제조 불러오기
미리보기
신청
저장

※ 참고사항

1. 영양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 제공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 품목제조보고시 정보와 유통제품의 표시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며, 표시정보 위반 등의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2. '00g(또는 mg) 미만'으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함량으로 입력 권장
3. 영양 강조 등 제품에 표시 중인 영양성분 정보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모두 입력
4. 표시의무 영양성분 이외의 영양성분도 공공데이터 제공을 원할 경우에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입력 가능

총 내용량당 100g당 100mL당 단위 내용량당
 총 내용량 g mL 단위 내용량 g mL

+ 필수영양성분

순번	영양성분명	함량	단위
1	열량	88	kcal
2	나트륨	150	mg
3	탄수화물	12	g
4	당류	1	g
5	지방	3.6	g
6	트랜스지방	0	g
7	포화지방	1.5	g
8	콜레스테롤	0	mg
9	단백질	2	g

+ 선택영양성분

순번	영양성분명	함량	단위	삭제
1	니아신 / 나이아신	0.01	mg NE	-
2	니코틴산	0.2	mg	-
3	니코틴아마이드	0.12	mg	-

영양성분추가

④ ‘영양성분’ 탭에서 영양성분 함량 입력

- 필수영양성분명(9종)*과 단위는 자동 표출
 -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 영양성분명의 함량 열을 한번 누르면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되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숫자만 입력 가능
- 열량, 당류, 지방 함량 입력 시 아래의 영양성분 검토 규칙을 확인 후 입력
 - ※ 당알콜, 식이섬유, 타가토스, 알룰로오스, 에리스리톨의 영양성분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 반드시 선택영양성분에서 추가하여 입력 필요

【영양성분 검토 규칙】

- 열량(kcal)=[{ 탄수화물 함량(g)-(당알콜(g) + 식이섬유(g) + 타가토스(g) + 알룰로오스(g) + 에리스리톨(g)) 함량 } × 4kcal + (당알콜 함량(g) × 2.4kcal)+ (식이섬유 함량(g) × 2kcal) + (타가토스 함량(g) × 1.5kcal) + (알룰로오스 함량(g) × 0kcal) + (에리스리톨 함량(g) × 0kcal)] + (단백질(g) × 4kcal) + (지방(g) × 9kcal)
 - * 허용오차 ±20% 이하
- 당류 함량(g) ≤ 탄수화물 함량(g)
- 지방(g) ≥ [트랜스지방(g) + 포화지방(g) + 콜레스테롤(g)*]
 - * 콜레스테롤은 mg를 g로 환산(1,000)

- 영양성분 함량은 실제 함량을 입력, 특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는 ‘○○g(또는 mg) 미만’ 또는 ‘0’으로 표시가 가능하나, 영양성분 정보 등록 시에는 가급적 실제 함량으로 입력
- 선택영양성분은 필수영양성분 외 120종[참고 6]까지 선택하여 추가 가능, **영양성분추가** 버튼 누름, 영양성분 조회창이 뜨면 영양성분명을 검색(영양성분명 및 영양성분코드로 검색 가능) 및 선택 후 함량 입력(단위 자동 표출)

【주의사항】

- 열량 등 9종은 ‘필수영양성분’에 자동 표출(영양성분명 및 단위)되며, 함량 미입력 시 다음 단계 진행 불가
- ‘영양성분명’에 따라 단위가 자동 표출되므로, 단위를 확인한 후 함량 입력 필요. 특히, 콜레스테롤의 입력 단위는 mg으로 단위가 다를 경우 환산 후 입력
- 영양성분 함량은 소수점 2자리까지 숫자만 입력 가능

<화면>

※ 참고사항

1. 영양성분 정보는 해당데이터 제공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 품목제조보고서 정보와 유류제조의 표시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며, 표시정보 위반 등의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2. '0.0g(또는 mg) 미만'으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함량으로 입력 권장
3. 영양 강조 해 제목에 표시 중인 영양성분 정보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모두 입력
4. 표시의무 영양성분 이외의 영양성분은 해당데이터로 제공될 수 없으며,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입력 가능

총 내용량당 100g당 100mL당 단위 내용량당
 총 내용량 180
 g mL
단위 내용량 180
 g mL

필수영양성분 9종은 자동표출되므로 함량만 입력

+ 필수영양성분				+ 선택영양성분				
순번	영양성분명	함량	단위	순번	영양성분명	함량	단위	삭제
1	열량	88	kcal	1	니아신 / 나이아신	0.01	mg NE	-
2	나트륨	150	mg	2	니코틴산	0.2	mg	-
3	탄수화물	12	g	3	니코틴아마이드	0.12	mg	-
4	당류	1	g					
5	지방	3.6	g					
6	트랜스지방	0	g					
7	포화지방	1.5	g					
8	콜레스테롤	0	mg					
9	단백질	2	g					

선택영양성분은 직접 추가 입력

※ 참고사항

1. 영양성분 정보는 해당데이터 제공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 품목제조보고서 정보와 유류제조의 표시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며, 표시정보 위반 등의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2. '0.0g(또는 mg) 미만'으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함량으로 입력 권장
3. 영양 강조 해 제목에 표시 중인 영양성분 정보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모두 입력
4. 표시의무 영양성분 이외의 영양성분은 해당데이터로 제공될 수 없으며,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입력 가능

총 내용량당 100g당 100mL당 단위 내용량당
 총 내용량 180
 g mL
단위 내용량 180
 g mL

영양성분 조회 X 닫기

순번	4	영양성분코드	영양성분명	영문명	구분	단위	5
1	<input type="checkbox"/>	A001	열량	Energy	일반성분	kcal	
2	<input type="checkbox"/>	A002	나트륨	Sodium	일반성분	mg	
3	<input type="checkbox"/>	A003	탄수화물	Carbohydrate	일반성분	g	
4	<input type="checkbox"/>	A004	당류	Sugars, total	일반성분	g	
5	<input type="checkbox"/>	A005	지방	Fat, total	일반성분	g	
6	<input type="checkbox"/>	A006	트랜스지방	Fatty acids, total	일반성분	g	
7	<input type="checkbox"/>	A007	포화지방	Fatty acids, total saturated	일반성분	g	
8	<input type="checkbox"/>	A008	콜레스테롤	Cholesterol	일반성분	mg	
9	<input type="checkbox"/>	A009	단백질	Protein	일반성분	g	
10	<input checked="" type="checkbox"/>	B001	니아신 / 나이아신	Niacin	수용성비타민	mg NE	
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B002	니코틴산	Nicotinic acid	수용성비타민	mg	
12	<input checked="" type="checkbox"/>	B003	니코틴아마이드	Nicotinamide	수용성비타민	mg	
13	<input type="checkbox"/>	B004	비오틴 / 바이오틴	Biotin	수용성비타민	µg	
14	<input type="checkbox"/>	B005	티아민 B1 / 티아민	Vitamin B1 / Thiamin	수용성비타민	mg	

⑤ 입력 완료 후 저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제출 완료

- 영양성분 정보 등 입력 후 저장 및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제출 완료
- 입력한 영양성분 함량이 영양성분 검토 규칙 범위를 벗어나면 안내창이 뜨고 민원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입력한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수정 후 저장 및 신청 필요

<화면>

신청업소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상세정보 영양성분 첨부서류 품목제조 불러오기 미리보기 **신청** 저장

※ 참고사항
1. 영양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 제공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 품목제조보고서 정보와 유통제품의 표시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며, 표시정보 위반 등의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2. '○○g(또는 mg) 미만' 으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함량으로 입력 권장
3. 영양 강조 등 계통에 표시 중인 영양성분 정보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모두 입력
4. 표시의무 영양성분 이외의 영양성분도 공공데이터로 제공을 원할 경우에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입력 가능

총 내용량당 100g당 100mL당 단위 내용량당 총 내용량 180 g mL 단위 내용량 180 g mL

+ 필수영양성분 + 선택영양성분 **영양성분추가**

www.foodsafetykorea.go.kr 내용:
-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의 ±20% 범위를 벗어납니다.
- 당류는 탄수화물 함량보다 적거나 같아야 합니다.
- 지방은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을 합한 함량보다 많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 때 콜레스테롤은 mg을 g으로 환산한 값(/1,000)이어야 합니다.
다시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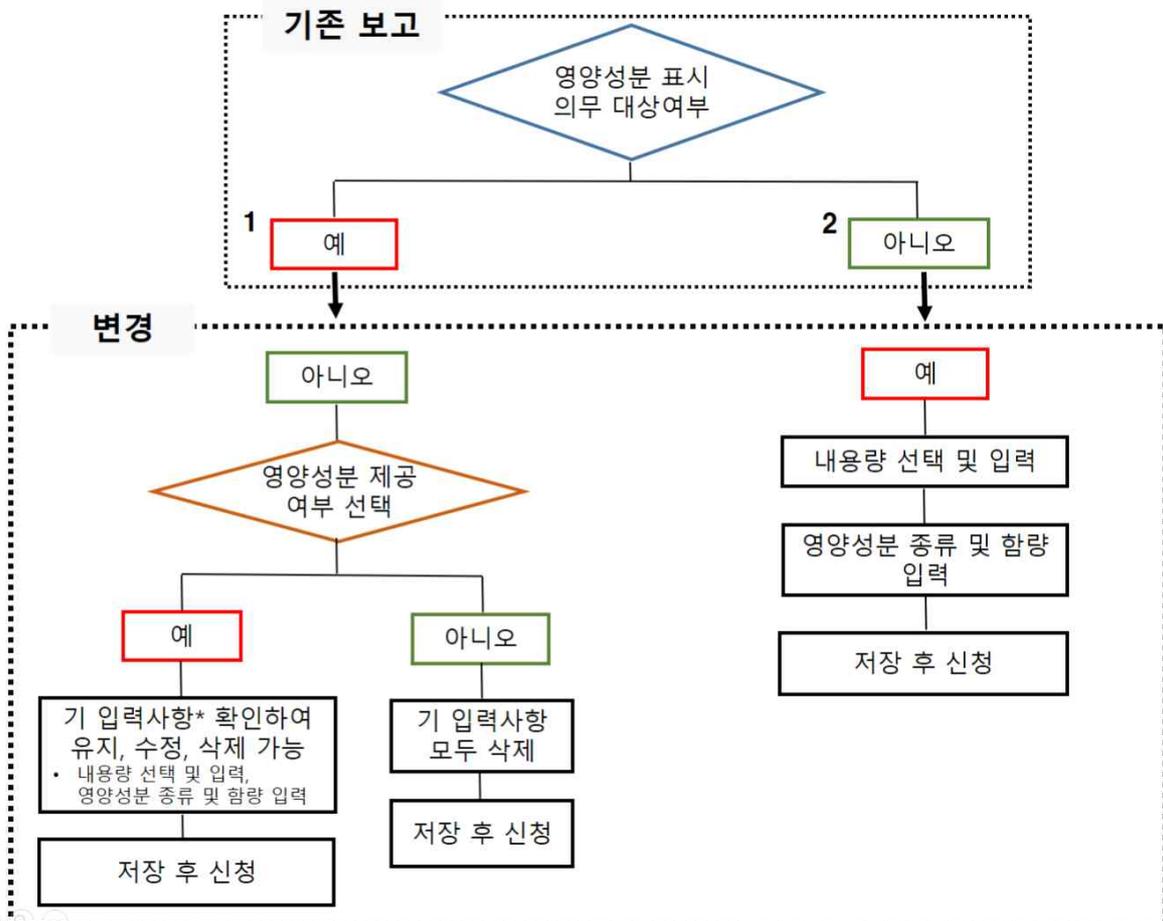
3. 영양성분 정보 변경

개 요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영양성분 정보 변경

- 영양표시 대상 식품여부를 변경하는 경우
- 영양성분 정보(내용량, 영양성분 종류 및 함량)를 변경하는 경우
- 제도 시행(2023.7.1.) 이전에 보고된 식품이지만 영양성분 정보의 등록을 원하는 경우

3.1. 변경 절차 흐름도



3.2. 영양성분 정보 변경 방법

3.2.1. 영양표시 대상 식품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

3.2.1.1. ‘예’ → ‘아니오’로 변경

✓ 기존에 영양표시 대상(예) 식품(제품)으로 보고하였으나, 영양표시 비대상(아니오)으로 변경하는 경우 (참고 5]의 2번에 해당하는 사례 등이 포함됨)

* (사례 1) '23.7.1.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 한 B to C 제품(영양표시 대상 O,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을 B to B 제품(영양표시 대상 X,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제조하여 유통하는 경우

(사례 2) '23.7.1.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 한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을 30제곱 센티미터 미만으로 변경하고, 이를 제조하여 유통하는 경우

① ‘품목제조기본정보’ 탭에서 ‘영양성분 변경여부’를 체크

※ ‘영양성분 변경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영양성분 정보를 변경할 경우, 변경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음. 반드시 ‘영양성분 변경여부’를 체크한 후 변경

<화면>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managing food product information. The '품목제조기본정보' (Product Basic Information) tab is active. Under the '영양성분' (Nutrition Information) section, the '영양성분 변경여부' (Change Nutrition Information) checkbox is checked and highlighted with a red dashed box. Other checkboxes for '제품명 변경여부', '유통/소비가환변경여부', '원재료 변경여부', '포장재질변경여부', and '기타 변경여부' are unchecked. A red asterisk warning message is visible below the checkboxes, stating that changes will only be reflected if the checkbox is checked. The '식품유형' (Food Type) dropdown menu is set to '두부' (Tofu).

② ‘품목제조상세정보’ 탭에서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니오’로 선택, 영양성분 제공 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영양성분 제공여부’ 해제 시 안내창(기존 입력한 영양성분 정보 초기화 됨)이 나타나며,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입력한 정보는 삭제
- ‘영양성분 제공여부’ 미해제 시 기존에 입력한 영양성분 정보는 ‘영양성분’ 탭에서 ‘필수영양성분’에 자동 표출, 내용량과 영양성분 종류 및 함량 등 수정 가능

※ '2.2.3.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③, ④를 참고하여 수정

<화면>

www.testmfs.go.kr의 메시지
영양성분 목록이 초기화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미리보기 신청 저장

확인 취소

영양성분 제공여부 체크 해제시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예 아니오 영양성분 제공여부

*'아니오' 선택시에도 '영양성분 제공여부'를 체크할 경우 영양성분 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기타항목을 지우고 싶은 경우 "없음." 이라고 입력해주세요

☞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 → '아니오' 변경

① '영양성분 제공여부' 미해제 시 ⇒ 가장 마지막에 입력한 영양성분 정보 표출

② '영양성분 제공여부' 해제 시 ⇒ 입력한 영양성분 목록 초기화 안내 ⇒ 확인 버튼 누를 시 기존에 입력된 영양성분 정보 삭제

③ 입력 완료 후 저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제출 완료

3.2.1.2. ‘아니오’ → ‘예’로 변경

✓ 기존에 영양표시 비대상(아니오) 식품(제품)으로 보고하였으나, 영양표시 대상(예)으로 변경하는 경우 (참고 5)의 1번에 해당하는 사례 등이 포함됨)

* (사례 1) `19년 떡류 매출액이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인 업소는 `23.12.31.까지 영양표시 비대상(`24.1.1.부터 영양표시 대상) → `23.7.1. 이후 신규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은 `24.1.1.부터 영양표시 대상에 해당하므로 변경

(사례 2) `23.7.1.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 한 B to B 제품(영양표시 대상 X,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을 B to C 제품(영양표시 대상 O,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으로 제조하여 유통하는 경우

① ‘품목제조기본정보’ 탭에서 ‘영양성분 변경여부’를 체크

※ ‘영양성분 변경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영양성분 정보를 변경할 경우, 변경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음. 반드시 ‘영양성분 변경여부’를 체크한 후 변경

<화면>

② ‘품목제조상세정보’ 탭에서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로 선택

③ ‘영양성분’ 탭에서 내용량과 영양성분 함량 입력

※ `2.2.1.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③, ④를 참고하여 수정

④ 입력 완료 후 저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제출 완료

3.2.2. 영양성분 정보(내용량, 영양성분 종류 및 함량)를 변경하는 경우

① ‘품목제조기본정보’ 탭에서 ‘영양성분 변경여부’를 체크

※ ‘영양성분 변경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영양성분 정보를 변경할 경우, 변경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음. 반드시 ‘영양성분 변경여부’를 체크한 후 변경

<화면>

식품,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시군구) ※ 식약처에서 관할되는 민원 상태만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업소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상세정보 영양성분 구비서류 미리보기 신청 저장

+ 품목제조 기본정보

자주하는 문의

변경항목 제품명변경여부 유통/소비기한변경여부 원재료 변경여부 포장저질변경여부 영양성분 변경여부 기타 변경여부

※체크박스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만 변경이 됩니다.
※체크박스 선택을 하셔야 해당 입력창이 활성화 됩니다. 필히 선택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유형 ※ 식품유형 변경은 각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② ‘영양성분’ 탭에서 내용량, 영양성분 종류 및 함량 등 정보를 변경 (수정·추가·삭제)하여 입력

②-1. (내용량 변경) ①총 내용량당, ②100g당, ③100mL당, ④단위 내용량당 중 1개를 선택하였으나, 필요할 경우 변경 가능

→ 변경 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 입력하고, 내용량 변경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증감도 확인하여 변경

- (① 선택) 총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영양성분 함량은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입력
- (② 또는 ③ 선택) 총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영양성분 함량은 100g(mL)을 기준으로 입력
- (④ 선택) 단위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총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영양성분 함량은 단위 내용량을 기준으로 입력

【주의사항】

- 총 내용량은 필수 입력값으로, 미입력 시 다음 단계 진행 불가
- 총 내용량이 상이한 2개 이상의 제품일 경우 대표되는 1개의 제품을 자율 선택하여 영양성분 정보를 입력(최소단위로 선택하여 입력 권장)

②-2. (영양성분 변경)

- 필수영양성분(9종)은 함량만 변경 가능, 선택영양성분(120종)은 종류 및 함량에 대해 추가, 변경, 삭제 가능

【주의사항】

- 영양성분 함량은 실제 함량을 입력, 특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OOg (또는 mg) 미만' 또는 '0'으로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영양성분 정보 등록 시에는 가급적 실제 함량으로 입력
- '영양성분명'에 따라 단위가 자동 표출되므로, 단위를 확인한 후 함량 입력 필요. 특히, 콜레스테롤의 입력 단위는 mg으로 단위가 다를 경우 환산 후 입력
- 영양성분은 소수점 2자리까지 숫자만 입력 가능

③ 입력 완료 후 저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제출 완료

3.2.3. 제도 시행(2023.7.1.) 이전에 품목제조보고한 식품이나, 영양성분 정보의 등록(변경포함)을 원하는 경우

✓ '23년 7월 1일 이전에 품목제조보고한 식품 등의 경우 영양성분 정보를 등록할 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영양정보 등록·변경 가능

* (사례 1) '20.7.1. 신규 품목제조보고한 'OO과자'는 영양표시 대상으로 제품의 포장지에는 영양 성분 정보를 표시하여 제조·판매 중. '23.7.5. 품목제조보고 변경 시 영양정보를 등록할 의무는 없으나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영양성분 정보를 자유롭게 등록·변경 가능

(사례 2) 품목제조보고 변경 사항(①제품명, ②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③소비기한)에 해당되지 않으나,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영양성분 정보를 자유롭게 등록·변경 가능

① '품목제조기본정보' 탭에서 '영양성분 변경여부'를 체크

※ '영양성분 변경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영양성분 정보를 변경할 경우, 변경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음. 반드시 '영양성분 변경여부'를 체크한 후 변경

<화면>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product registration. The '영양성분 변경여부' checkbox is checked, indicating that the user wants to update the nutrition information. The interface includes tabs for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상세정보', '영양성분', and '구비서류'. There are also buttons for '마리보기', '신청', and '저장'. A red dashed box highlights the checked '영양성분 변경여부' checkbox. Below the checkboxes, there are instructions: '※체크박스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만 변경이 됩니다.' and '※체크박스 선택을 하셔야 해당 입력창이 활성화 됩니다. 필히 선택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The '변경항목' field is empty, and the '식품유형' is set to '두부'. A note at the bottom says '※ 식품유형 변경은 각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② '품목제조상세정보' 탭 -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예',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아니오' 선택

- ('예' 선택 시) '2.2.1.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를 참고하여 입력

- ('아니오' 선택 시) '2.2.3.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양 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참고하여 입력

③ 입력 완료 후 저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제출 완료

참고 1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보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제품정보	식품의 유형	요청하는 품목제조보고번호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품질유지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뒤쪽에 적습니다.			
	용도·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성상			
	위탁생산 여부		[]에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탁 영업소의 영업의 종류: 위탁제조공정: 			
	품목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성분 조절제품 []경도 조절제품 []점도조절 제품 []해당 없음 기능성표시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균·멸균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살균 []살균 []멸균	[]에 []아니오	
기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사항을 보고합니다.

보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합니다) 1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른 소비기한 표시 대상 식품 외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을 포함합니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2. 식품의 영양성분

※ 작성방법

가. '내용량'란에는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① 총 내용량당 [] ② 100(g 또는 mL)당 [] ③ 단위 내용량당 []

나. 가목에 따라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총 내용량' 또는 '단위 내용량'을 적습니다.

1) ① 또는 ② 방법으로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만 적습니다.

2) ③ 방법으로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과 '단위 내용량'을 모두 적습니다.

번호	영양성분	내용량		번호	영양성분	내용량	
1	열량		kcal	6	트랜스지방		g
2	나트륨		mg	7	포화지방		g
3	탄수화물		g	8	콜레스테롤		mg
4	당류		g	9	단백질		g
5	지방		g	10	그 밖의 영양성분		
총 내용량: (g 또는 mL)				단위 내용량: (g 또는 mL)			

유의사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영업자는 '요청하는 품목제조보고번호'가 이미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는지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3. '배합비율'란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만 적습니다.
4. '식품의 영양성분'란은 앞쪽의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란에 '예'라고 표시한 경우만 적습니다.

참고 2

축산물 품목제조보고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3. 2.>

품목제조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보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허가번호
	소재지	

제품정보	품목의 유형	주원료의 유형(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품명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쪽에 작성)
	용도·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단위	
	성상	
	품목의 특성	
	▪ 분쇄한 포장육 해당 여부	[]에 []아니오
	▪ 살균·멸균 제품 해당 여부	[]비살균 []살균 []멸균
▪ 고열량·저영양 제품 해당 여부	[]에 []아니오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	[]에 []아니오	
▪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에 []아니오	
▪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에 []아니오	
▪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영양성분 조절 제품 [], 경도 조절 제품 [], 점도 조절 제품 [], 해당 없음 []		

기타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의 품목을 제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합니다) 1부 3. 소비기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1부 4. 삭제 <2020. 4. 16.>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1.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5		
12			27		
13			28		
14			29		
15			30		

2. 축산물의 영양성분

※ 작성방법

가. '내용량'란에는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① 총 내용량당 [] ② 100(g 또는 mL)당 [] ③ 단위 내용량당 []

나. 가목에 따라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총 내용량' 또는 '단위 내용량'을 적습니다.

1) ① 또는 ② 방법으로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만 적습니다.

2) ③ 방법으로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과 '단위 내용량'을 모두 적습니다.

번호	영양성분	내용량		번호	영양성분	내용량	
1	열량		kcal	6	트랜스지방		g
2	나트륨		mg	7	포화지방		g
3	탄수화물		g	8	콜레스테롤		mg
4	당류		g	9	단백질		g
5	지방		g	10	그 밖의 영양성분		
총 내용량: (g 또는 mL)				단위 내용량: (g 또는 mL)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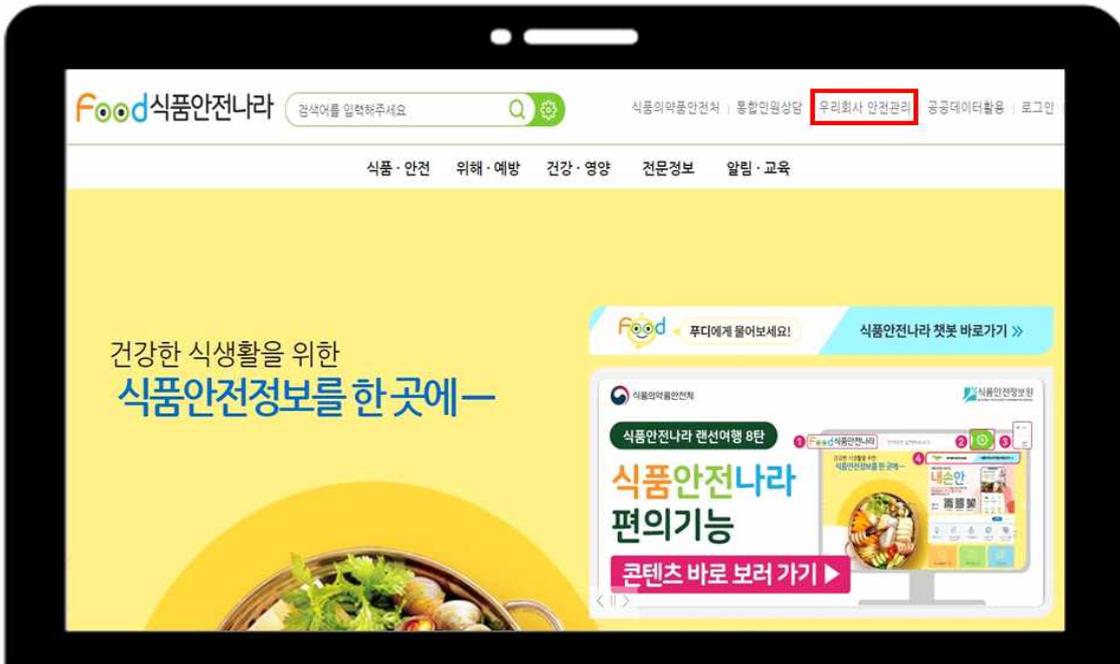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는 품목제조보고번호의 규칙(영업인허가번호 11자 - 품목번호 1~ 5자)에 맞아야 하며, 기존에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3. 배합비를 표시는 원재료 중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과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표시·광고 시 특정 성분을 강조한 경우(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만 해당합니다.
4. '축산물의 영양성분'란은 앞쪽의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란에 '예'라고 표시한 경우만 적습니다.

참고 3

식품안전나라 품목제조보고 입력 화면 안내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 우측 상단 '우리회사 안전관리' 로그인

식품안전나라 우리회사 안전관리



참고 4

영양표시 대상 식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24.>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2년 1월 1일
 2.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4년 1월 1일
 3.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6년 1월 1일
- ※ 부칙 <총리령 제1701호, 2021.5.27.>에 따라 위 각 호 1, 2, 3에 해당하는 식품유형은 추가 61개 식품유형에만 적용되며,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식품표시 FAQ > 영양성분 표시 대상 확대 제도기간 부여 안내'를 통하여 관련 정보 확인 가능(23.8. 기준). 이외 아래의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모두 표시의무 대상임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1.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한다)
- 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 다.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
- 라.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마. 당류: 당류가공품
- 바. 잼류
- 사. 두부류 또는 묵류
- 아. 식용유지류: 식물성유지류 및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 자. 면류
- 차. 음료류: 다류(침출차·고형차는 제외한다),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는 제외한다),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 음료 및 기타 음료

- 카. 특수영양식품
- 타. 특수의료용도식품
- 파.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혼합장 및 기타 장류
- 하. 조미식품: 식초(발효식초만 해당한다), 소스류, 카레(카레만 해당한다)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
- 거.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한다), 절임류(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한다) 및 조림류
- 너.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시리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
- 더. 식육가공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분쇄가공육제품만 해당한다), 식육추출가공품 및 식육함유가공품
- 러.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퍼센트 제품은 제외한다)
- 머. 유가공품: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치즈류 및 분유류
- 버.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퍼센트 제품은 제외한다):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
- 서.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즉석섭취식품·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및 만두류
- 어. 건강기능식품
- 저. 가목부터 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다.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라.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마.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식육 및 알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품목류(식품유형)

○ 품목류(식품유형): (기존 표시의무) 115개* + (추가) 61개**

* 기존 표시의무 115개 품목류는 아래 시행일에 관계없이 영양표시를 해야 함

** 추가 61개 품목류는 2019년 매출액에 따라 아래 시행일에 맞춰 제품에 영양표시를 해야 하므로, 2023.7.1. 이후에 신규로 제조·가공하는 식품 중 추가 61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영양표시 시행일에 맞추어 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정보 입력

※ 부칙 <총리령 제1701호, 2021.5.27.>에 따른 추가 61개 품목류는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식품표시 FAQ > 영양성분 표시 대상 확대 계도기간 부여 안내'를 통하여 관련 정보 확인 가능('23.8. 기준).

○ 시행일 (☞ 추가 61개 품목만 적용)

- 1)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2년 1월 1일
- 2)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4년 1월 1일
- 3)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6년 1월 1일

[기존 표시의무] 115개		[추가] 61개
1. 과자	59. 혼합음료	1. 떡류
2. 캔디류	60. 음료베이스	2. 당류가공품
3. 빵류	61. 영아용 조제유	3. 두부
4. 아이스크림	62. 성장기용 조제유	4. 유바
5. 저지방아이스크림	63. 영아용 조제식	5. 가공두부
6. 아이스밀크	64. 성장기용 조제식	6. 묵류
7. 샤베트	65. 영·유아용 이유식	7. 식물성크림
8. 비유지방아이스크림	66. 환자용 식품	8. 액상차
9. 빙과	67.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9. 발효식초
10. 코코아매스	68.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10. 복합조미식품
11. 코코아버터	69.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1. 마요네즈
12. 코코아분말	70. 환자용 식품	12. 토마토케첩
13. 기타 코코아가공품	7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13. 소스
14. 초콜릿	72.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14. 카레
15. 밀크초콜릿	73.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5. 향신료조제품
16. 화이트초콜릿	74. 체중조절용 식품	16. 김치속
17. 준초콜릿	75. 임신·수유부용 식품	17. 배추김치
18. 초콜릿가공품	76. 개량메주	18. 절임식품(절임배추 제외)
19. 잼		19. 당절임
20. 기타잼		20. 조림류

[기존 표시의무] 115개		[추가] 61개
21. 콩기름	77. 한식간장	21. 전분
22. 옥수수기름	78. 양조간장	22. 전분가공품
23. 채종유	79. 산분해간장	23. 밀가루
24. 미강유	80. 효소분해간장	24. 영양강화밀가루
25. 참기름	81. 혼합간장	25. 땅콩버터
26. 추출참깨유	82. 된장	26.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27. 들기름	83. 고추장	27. 과·채가공품
28. 추출들깨유	84. 춘장	28. 곡류가공품
29. 홍화유	85. 혼합장	29. 두류가공품
30. 해바라기유	86. 기타장류	30. 서류가공품
31. 목화씨기름	87. 시리얼	31. 기타농산가공품
32. 땅콩기름	88. 햄	32. 베이컨류
33. 올리브유	89. 생햄	33. 건조저장육류
34. 팜유류	90. 프레스햄	34. 양념육
35. 야자유	91. 소시지	35. 분쇄가공육제품
36. 고추씨기름	92. 발효소시지	36. 식육추출가공품
37. 기타 식물성유지	93. 혼합소시지	37. 식육함유가공품
38. 혼합식용유	94. 우유	38. 전란액
39. 향미유	95. 환원유	39. 난황액
40. 가공유지	96. 강화우유	40. 난백액
41. 쇼트닝	97. 유산균첨가우유	41. 전란분
42. 마가린	98. 유당분해우유	42. 난황분
43. 생면	99. 가공유	43. 난백액
44. 숙면	100. 발효유	44. 알가열제품
45. 건면	101. 농후발효유	45. 피단
46. 유당면	102. 크림발효유	46. 알함유가공품
47. 커피	103. 농후크림발효유	47. 산양유
48. 농축과·채즙	104. 발효버터유	48. 어육살
49. 과·채주스	105. 발효유분말	49. 연육
50. 과·채음료	106. 자연치즈	50. 어육반제품
51. 탄산음료	107. 가공치즈	51. 어묵
52. 탄산수	108. 전지분유	52. 기타 어육가공품
53. 원액두유	109. 탈지분유	53. 젓갈
54. 가공두유	110. 가당분유	54. 양념젓갈
55. 유산균음료	111. 혼합분유	55. 액젓
56. 효모음료	112. 어육소시지	56. 조미액젓
57. 기타발효음료	113. 즉석섭취식품	57. 조미건어포
58. 인삼·홍삼음료	114. 즉석조리식품	58. 건어포
	115. 만두류	59. 기타 건포류
		60. 조미김
		61. 기타수산물가공품

참고 5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시행일 조정

※ [참고 4] 추가 61개 품목은 2019년 매출액에 따라 영양표시 시행일이 상이하므로 주의 필요 (☞ 2019년 매출이 없는 경우 '50억원 미만'으로 간주)

1. 시행일 조정 식품유형

-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2년 1월 1일
-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4년 1월 1일
-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6년 1월 1일

61개 품목 (☞ 2019년 매출액에 따라 영양표시 시행일이 다르므로 주의)

1. 떡류	16. 김치속	31. 기타농산가공품	46. 알함유가공품
2. 당류가공품	17. 배추김치	32. 베이컨류	47. 산양유
3. 두부	18. 절임식품(절임배추 제외)	33. 건조저장육류	48. 어육살
4. 유바	19. 당절임	34. 양념육	49. 연육
5. 가공두부	20. 조림류	35. 분쇄가공육제품	50. 어육반제품
6. 묵류	21. 전분	36. 식육추출가공품	51. 어묵
7. 식물성크림	22. 전분가공품	37. 식육함유가공품	52. 기타 어육가공품
8. 액상차	23. 밀가루	38. 전란액	53. 젓갈
9. 발효식초	24. 영양강화밀가루	39. 난황액	54. 양념젓갈
10. 복합조미식품	25. 땅콩버터	40. 난백액	55. 액젓
11. 마요네즈	26.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41. 전란분	56. 조미액젓
12. 토마토케첩	27. 과채가공품	42. 난황분	57. 조미건어포
13. 소스	28. 곡류가공품	43. 난백액	58. 건어포
14. 카레	29. 두류가공품	44. 알가열제품	59. 기타 건포류
15. 향신료조제품	30. 서류가공품	45. 피단	60. 조미김
			61. 기타수산물가공품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식육 및 알류

참고 6

영양성분 종류 및 단위(129개)

구분	번호	코드	영양성분	단위	영양성분(영문명)
일반 표시의무 (필수 영양성분 9종) (A)	1	A001	열량	kcal	Energy
	2	A002	나트륨	mg	Sodium
	3	A003	탄수화물	g	Carbohydrate
	4	A004	당류	g	Sugars, total
	5	A005	지방	g	Fat, total
	6	A006	트랜스지방	g	Fatty acids, total
	7	A007	포화지방	g	Fatty acids, total saturated
	8	A008	콜레스테롤	mg	Cholesterol
	9	A009	단백질	g	Protein
수용성 비타민 (B)	10	B001	니아신 / 나이아신	mg NE	Niacin
	11	B002	니코틴산	mg	Nicotinic acid
	12	B003	니코틴아마이드	mg	Nicotinamide
	13	B004	비오틴 / 바이오틴	µg	Biotin
	14	B005	비타민 B1 / 티아민	mg	Vitamin B1 / Thiamin
	15	B006	비타민 B2 / 리보플라빈	mg	Vitamin B2 / Riboflavin
	16	B007	비타민 B6	mg	Vitamin B6
	17	B008	비타민 B12	µg	Vitamin B12
	18	B009	비타민 C / 아스코르빈산	mg	Vitamin C / Ascorbic acid
	19	B010	엽산	µg DFE	Folate
	20	B011	콜린	mg	Choline, total
	21	B012	판토텐산	mg	Pantothenic acid
지용성 비타민 (C)	22	C001	비타민 A	µg RAE	Vitamin A
	23	C002	레티놀	µg	Retinol
	24	C003	베타카로틴	µg	β-Carotene
	25	C004	비타민 D	µg	Vitamin D
	26	C005	비타민 D2	µg	Vitamin D2 / Ergocalciferol
	27	C006	비타민 D3	µg	Vitamin D3 / Cholecalciferol
	28	C007	비타민 E	mg α-TE	Vitamin E
	29	C008	알파 토코페롤	mg	α-Tocopherol
	30	C009	베타 토코페롤	mg	β-Tocopherol
	31	C010	감마 토코페롤	mg	γ-Tocopherol
	32	C011	델타 토코페롤	mg	δ-Tocopherol
	33	C012	알파 토코트리에놀	mg	α-Tocotrienol
	34	C013	베타 토코트리에놀	mg	β-Tocotrienol
	35	C014	감마 토코트리에놀	mg	γ-Tocotrienol
	36	C015	델타 토코트리에놀	mg	δ-Tocotrienol
	37	C016	비타민 K	µg	Vitamin K
	38	C017	비타민 K1	µg	Vitamin K1
39	C018	비타민 K2	µg	Vitamin K2	
당류 (D)	40	D001	갈락토오스	g	Galactose
	41	D002	과당	g	Fructose
	42	D003	당알콜	g	Sugar alcohols, total
	43	D004	맥아당	g	Maltose
	44	D005	식이섬유	g	Fibre, total dietary
	45	D006	알룰로오스	g	Allulose
	46	D007	에리스리톨	g	Erythritol
	47	D008	유당	g	Lactose
	48	D009	자당	g	Sucrose
	49	D010	타가토스	g	Tagatose

구분	번호	코드	영양성분	단위	영양성분(영문명)
	50	D011	포도당	g	Glucose
지방산 (E)	51	E001	불포화지방	g	Fatty acids, total unsaturated
	52	E002	EPA + DHA	mg	Eicosapentaenoic acid + Docosahexaenoic acid
	53	E003	가돌레산(20:1 n-11) / 에이코센산(20:1 n-9)	mg	Gadoleic acid / Eicosenoic acid
	54	E004	감마 리놀렌산(18:3 n-6)	mg	γ-Linolenic acid
	55	E005	네르본산(24:1)	mg	Nervonic acid
	56	E006	도코사디에노산(22:2)	mg	Docosadienoic acid
	57	E007	도코사펜타에노산(DPA, 22:5 n-3)	mg	Docosapentaenoic acid (DPA)
	58	E008	도코사헥사에노산 (DHA, 22:6 n-3)	mg	Docosahexaenoic acid (DHA)
	59	E009	디호모리놀렌산(20:3 n-3)	mg	Dihomolinolenic acid
	60	E010	라우르산(12:0)	mg	Lauric acid
	61	E011	리그노세르산(24:0)	mg	Lignoceric acid
	62	E012	리놀레산(18:2 n-6)	g	Linoleic acid
	63	E013	미리스톨레산(14:1)	mg	Myristoleic acid
	64	E014	미리스트산(14:0)	mg	Myristic acid
	65	E015	박센산(18:1 n-7)	mg	Vaccenic acid
	66	E016	베헨산(22:0)	mg	Begenic acid
	67	E017	부티르산(4:0)	mg	Butyric acid
	68	E018	스테아르산(18:0)	mg	Stearic acid
	69	E019	스테아리돈산(18:4 n-3)	mg	Stearidonic acid
	70	E020	아라키돈산(20:4 n-6)	mg	Arachidonic acid
	71	E021	아라키드산(20:0)	mg	Arachidic acid
	72	E022	알파리놀렌산(18:3 n-3)	g	α-Linolenic acid
	73	E023	에루크산(22:1)	mg	Erucic acid
	74	E024	에이코사디에노산(20:2 n-6)	mg	Eicosadienoic acid
	75	E025	에이코사트리에노산(20:3 n-6)	mg	Eicosatrienoic acid
	76	E026	에이코사펜타에노산 (EPA, 20:5 n-3)	mg	Eicosapentaenoic acid (EPA)
	77	E027	오메가3 지방산	g	Total n-3 polyunsaturated fatty acids
	78	E028	오메가6 지방산	g	Total n-6 polyunsaturated fatty acids
	79	E029	올레산(18:1 n-9)	mg	Oleic acid
	80	E030	카프로산(6:0)	mg	Caproic acid
	81	E031	카프르산(10:0)	mg	Capric acid
	82	E032	카프릴산(8:0)	mg	Caprylic acid
	83	E033	트라이데칸산(13:0)	mg	Tridecanoic acid
	84	E034	트랜스 리놀레산(18:2t)	mg	trans-Linoleic acids
	85	E035	트랜스 리놀렌산(18:3t)	mg	trans-Linolenic acids
	86	E036	트랜스 올레산(18:1 trans n-9)	mg	Trans-Oleic acids
	87	E037	트리코산산(23:0)	mg	Tricosanoic acid
	88	E038	팔미톨레산(16:1)	mg	Palmitoleic acid
	89	E039	팔미트산(16:0)	mg	Palmitic acid
	90	E040	펜타데칸산(15:0)	mg	Pentadecanoic acid
	91	E041	헨에이코산산(21:0)	mg	Henicosanoic acid

구분	번호	코드	영양성분	단위	영양성분(영문명)
	92	E042	헵타데센산(17:1)	mg	Heptadecenoic acid
	93	E043	헵타데칸산(17:0)	mg	Heptadecanoic acid
무기질 (F)	94	F001	구리	µg	Copper
	95	F002	마그네슘	mg	Magnesium
	96	F003	망간	mg	Manganese
	97	F004	몰리브덴	µg	Molybdenum
	98	F005	불소	mg	Fluorine
	99	F006	셀레늄	µg	Selenium
	100	F007	아연	mg	Zinc
	101	F008	염소	mg	Chlorine
	102	F009	요오드	µg	Iodine
	103	F010	인	mg	Phosphorus
	104	F011	철	mg	Iron
	105	F012	칼륨	mg	Potassium
	106	F013	칼슘	mg	Calcium
	107	F014	크롬	µg	Chromium
아미노산 (G)	108	G001	아미노산	mg	Amino acids, total aromatic
	109	G002	필수아미노산	mg	Amino acids, total essential
	110	G003	비필수아미노산	mg	Amino acids, total non-essential
	111	G004	글루탐산	mg	Glutamic acid
	112	G005	글리신	mg	Glycine
	113	G006	라이신	mg	Lysine
	114	G007	류신 / 루신	mg	Leucine
	115	G008	메티오닌	mg	Methionine
	116	G009	발린	mg	Valine
	117	G010	세린	mg	Serine
	118	G011	시스테인	mg	Cysteine
	119	G012	아르기닌	mg	Arginine
	120	G013	아스파르트산	mg	Aspartic acid
	121	G014	알라닌	mg	Alanine
	122	G015	이소류신 / 이소루신	mg	Isoleucine
	123	G016	타우린	mg	Taurine
	124	G017	트레오닌	mg	Threonine
	125	G018	트립토판	mg	Tryptophan
	126	G019	티로신	mg	Tyrosine
	127	G020	페닐알라닌	mg	Phenylalanine
128	G021	프롤린	mg	Proline	
129	G022	히스티딘	mg	Histidine	

3. '품목제조상세정보' 탭 -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자동 선택

+ 식품,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시군구) ※ 식약처에서 전할되는 민원 상담만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업소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상세정보 영양성분 첨부서류 품목제조 불러오기 미리보기 신청 저장

+ 품목제조 상세정보

자주하는 문의

용도용법

제조방법

보관방법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성상

위탁생산여부 예 아니요

고열량,저열량 식품 해당 여부 고열량/저열량 판별 예 아니요 해당없음 ※ 고열량,저열량 식품유형의 경우, 필수로 판별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해당 여부 예 아니요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해당 여부 영양성분 조절제품 경도 조절제품 점도조절 제품 해당없음

살균 멸균 제품의 해당 여부 비살균 살균 멸균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예 아니요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영양성분 제공여부 ※ '아니오' 선택시에도 '영양성분 제공여부'를 체크할 경우 영양성분 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기타

4. '영양성분' 탭에서 내용량 입력

- 단위 내용량 선택 → 총 내용량 96g, 단위 내용량 48g 입력

+ 식품,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시군구) ※ 식약처에서 전할되는 민원 상담만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업소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상세정보 영양성분 첨부서류 품목제조 불러오기 미리보기 신청 저장

※ 참고사항

1. 영양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 제공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 품목제조보고시 정보와 유통제품의 표시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며, 표시정보 위반 등의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2. '○○g(또는 mg) 미만'으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함량으로 입력 권장

3. 영양 강조용 제품에 표시 중인 영양성분 정보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모두 입력

4. 표시의무 영양성분 이외의 영양성분도 공공데이터로 제공을 원할 경우에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입력 가능

총 내용량 g ○ mL 단위 내용량 g ○ mL

필수영양성분 단위 내용량당 체크 + 선택영양성분 영양성분추가

순번	영양성분명	함량	단위	순번	영양성분명	함량	단위	삭제
1	열량		kcal					
2	나트륨		mg					
3	단수화물		g					
4	당류		g					
5	지방		g					
6	트랜스지방		g					
7	포화지방		g					
8	콜레스테롤		mg					
9	단백질		g					

5. 필수영양성분 입력

- 과자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필수영양성분명, 단위 자동 표출 → 4번에서 단위 내용량 선택함에 따라 영양성분은 단위내용량 기준에 따른 함량 입력

+ 식품,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시군구) ※ 식약처에서 전할되는 민원 상태만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업소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상세정보 **영양성분** 첨부서류 품목제조 불러오기 미리보기 신청 저장

※ 참고사항
 1. 영양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 제공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 품목제조보고시 정보와 유류제품의 표시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며, 표시정보 위반 등의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2. 'Og(또는 mg) 미만' 으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함량으로 입력 권장
 3. 영양 강조 등 제품에 표시 중인 영양성분 정보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모두 입력
 4. 표시의무 영양성분 이외의 영양성분도 공공데이터로 제공을 원할 경우에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입력 가능

총 내용량당 100g당 100mL당 단위 내용량당 총 내용량 96 g mL 단위 내용량 48 g mL

+ 필수영양성분 + 선택영양성분 **영양성분추가**

순번	영양성분명	함량	단위
1	열량	255	kcal
2	나트륨	260	mg
3	탄수화물	30	g
4	당류	13	g
5	지방	14	g
6	트랜스지방	0	g
7	포화지방	8	g
8	콜레스테롤	0	mg
9	단백질	2	g

6. 선택영양성분 추가

- 비타민C는 선택영양성분으로 '영양성분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
- ① '영양성분추가' 선택 → ② '비타민 C' 입력 후 조회 → ③ 해당 영양성분 체크 후 선택

+ 식품,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시군구) ※ 식약처에서 전할되는 민원 상태만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업소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상세정보 **영양성분** 첨부서류 품목제조 불러오기 미리보기 신청 저장

※ 참고사항
 1. 영양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 제공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 품목제조보고시 정보와 유류제품의 표시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며, 표시정보 위반 등의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2. 'Og(또는 mg) 미만' 으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함량으로 입력 권장
 3. 영양 강조 등 제품에 표시 중인 영양성분 정보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모두 입력
 4. 표시의무 영양성분 이외의 영양성분도 공공데이터로 제공을 원할 경우에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입력 가능

총 내용량당 100g당 100mL당 단위 내용량당 총 내용량 96 g mL 단위 내용량 48 g mL

+ 필수영양성분 + 선택영양성분 **① 영양성분추가**

영양성분 검색 - 포트폴 1 - Microsoft Edge

안전하지 않음 | minwon.testmfs.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foodadmin/cpt/common/ntrfirdnt/searchNtrfirdnt.x...

영양성분 조회 X 닫기

구분: 전체 영양성분명:

영양성분코드:

②

※ 목록에서 선택된 영양성분은 추가, 선택되지 않은 영양성분은 삭제됩니다. ③

순번	선택	영양성분코드	영양성분명	영문명	구분	단위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8009	비타민 C / 아스코르빈산	Vitamin C / Ascorbic acid	수용성비타민	mg

7. 선택영양성분 입력 및 신청

- ① '비타민C' 함량 입력 → ② '저장' 버튼을 눌러 임시저장 → ③ '신청'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시군구) * 식약처에서 간할되는 민원 상담만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업소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상세정보 **영양성분** 첨부서류 품목제조 불러오기 미리보기 **신청** **저장**

※ 참고사항
 1. 영양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 저장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 품목제조보고시 정보와 유통제품의 표시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며, 표시정보 위반 등의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2. '○○g(또는 mg) 미만' 으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함량으로 입력 권장
 3. 영양강조 등 제품에 표시 중인 영양성분 정보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모두 입력
 4. 표시의무 영양성분 이외의 영양성분도 공공데이터로 저장을 원할 경우에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입력 가능

총 내용량당 100g당 100mL당 단위 내용량당 총 내용량 96 g mL 단위 내용량 48 g mL

+ 필수영양성분 + 선택영양성분 ① 영양성분추가

순번	영양성분명	함량	단위
1	열량	255	kcal
2	나트륨	260	mg
3	탄수화물	30	g
4	당류	13	g
5	지방	14	g
6	트랜스지방	0	g
7	포화지방	8	g
8	콜레스테롤	0	mg
9	단백질	2	g

순번	영양성분명	함량	단위	삭제
1	비타민 C / 아스코르빈산	7.2	mg	-

참고 8

(변경 예시) 영양성분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라면 영양표시 정보 변경 예시>

영양정보			총 내용량 65 g
나트륨 1,290 mg 65%	탄수화물 47 g 15%	당류 3 g 3%	300 kcal
지방 10 g 19%	트랜스지방 0 g	포화지방 5 g 33%	
콜레스테롤 0 mg 0%	단백질 5 g 9%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 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경 전>

영양정보			총 내용량 65 g
나트륨 1,200 mg 65%	탄수화물 47 g 15%	당류 3 g 3%	300 kcal
지방 10 g 19%	트랜스지방 0 g	포화지방 5 g 33%	
콜레스테롤 0 mg 0%	단백질 5 g 9%	칼슘 97 mg 14%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 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경 후>

1. 기보고한 품목제조보고번호를 조회하여 제품정보 불러오기
2. '품목제조기본정보' 탭에서 변경항목 중 '영양성분 변경여부' 체크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시군구) ※ 식약처에서 진행되는 민원 상허만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업소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상세정보 영양성분 구비서류 미리보기 신청 저장

+ 품목제조 기본정보

자주하는 문의

변경항목 제품명변경여부 유류/소비기한변경여부 원재료 변경여부 포장재질변경여부 영양성분 변경여부 기타 변경여부

※ 체크박스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만 변경이 됩니다.
 ※ 체크박스 선택을 하셔야 해당 입력창이 활성화 됩니다. 글자 선택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유형 유라면 ※ 식품유형 변경은 각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제품명 라면

제품판매용도(내외수구분) 수출용 내수용 겸용 ※ 제품판매용도를 변경하시면 원재료가 초기화됩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3. '영양성분' 탭에서 필수영양성분 값 변경

- 필수영양성분 중 나트륨 함량 변경(1,290mg → 1,200mg)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시군구) ※ 식약처에서 진행되는 민원 상허만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업소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상세정보 영양성분 구비서류 미리보기 신청 저장

※ 참고사항
 1. 영양성분 정보는 공급데이터 제공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 품목제조보고시 정보와 유통제품의 표시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며, 표시정보 위반 등의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2. '○○g(또는 mg)' 미만으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함량으로 입력 권장
 3. 영양 강조 등 제품에 표시 중인 영양성분 정보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모두 입력
 4. 표시의무 영양성분 이외의 영양성분도 공급데이터로 제공을 원할 경우에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입력 가능

총 내용량당 100g당 100mL당 단위 내용량당 총 내용량 65 단위 내용량 g mL

+ 필수영양성분

순번	영양성분명	함량	단위
1	열량	300	kcal
2	나트륨	1,200	mg
3	탄수화물	47	g
4	당류	3	g
5	지방	10	g
6	트랜스지방	0	g
7	포화지방	5	g
8	콜레스테롤	0	mg
9	단백질	5	g

변경된 나트륨 함량 1,200mg 입력

+ 선택영양성분

영양성분추가

4. 선택영양성분 추가

- 상품 정보 변경으로 새롭게 추가된 칼슘은 선택영양성분으로 '영양성분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

① '영양성분추가' 선택 → ② '칼슘' 입력 후 조회 → ③ 해당 영양성분 체크 후 선택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시군구) ※ 식약처에서 진행되는 민원 상태만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형업소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상세정보 **영양성분** 구비서류 미리보기 신청 저장

※ 참고사항
 1. 영양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 제공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 품목제조보고서 정보와 유통제품의 표시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며, 표시정보 위반 등의 합성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2. '○○g(또는 mg)' 미만'으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함량으로 입력 권장
 3. 영양 강조 등 제품에 표시 중인 영양성분 정보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모두 입력
 4. 표시의무 영양성분 이외의 영양성분도 공공데이터로 제공을 원할 경우에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입력 가능

● 총 내용량당 ○ 100g당 ○ 100mL당 ○ 단위 내용량당 총 내용량 65 ● g ○ mL 단위 내용량 ○ g ○ mL

+ 필수영양성분 + 선택영양성분 **1** 영양성분추가

영양성분 검색 - 프로파일 1 - Microsoft Edge
 안전하지 않음 | minwon.testmfds.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foodadmin/cpt/common/ntrtrdnt/searchNtrtrdnt.x... A³

영양성분 조회 x 닫기

구분: -전체- 영양성분명: 칼슘
 영양성분코드:

2 Q 조회

※ 목록에서 선택된 영양성분은 추가, 선택되지 않은 영양성분은 삭제됩니다.

순번	선택	영양성분코드	영양성분명	영문명	구분	단위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F013	칼슘	Calcium	무기질	mg

3 선택

자주하는 문의 해설서
 7인정보제공 동의 최근 신청인정보
 0000-0000 담당자휴대전화 010-4659-4499
 ○ 아니오
 2인 문자로 통보됩니다.
 구비서류 미리보기 신청 저장
 표시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며, 표시정보 위반 등의 합성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검색하여 입력 가능
 총 내용량 65 ● g ○ mL 단위 내용량 ○ g ○ mL

5. 선택영양성분 입력 및 최종 신청

- ① '칼슘' 함량 입력 → ② '저장' 버튼을 눌러 임시저장 → ③ '신청'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시군구) ※ 식약처에서 진행되는 민원 상태만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형업소 품목제조기본정보 원재료명 품목제조상세정보 **영양성분** 구비서류 미리보기 신청 저장

※ 참고사항
 1. 영양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 제공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 품목제조보고서 정보와 유통제품의 표시정보가 불일치할 수 있으며, 표시정보 위반 등의 합성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2. '○○g(또는 mg)' 미만'으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함량으로 입력 권장
 3. 영양 강조 등 제품에 표시 중인 영양성분 정보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모두 입력
 4. 표시의무 영양성분 이외의 영양성분도 공공데이터로 제공을 원할 경우에는 '선택영양성분'에서 검색하여 입력 가능

● 총 내용량당 ○ 100g당 ○ 100mL당 ○ 단위 내용량당 총 내용량 65 ● g ○ mL 단위 내용량 ○ g ○ mL

+ 필수영양성분 + 선택영양성분 **1** 영양성분추가

순번	영양성분명	함량	단위	선택
1	칼슘	97	mg	<input type="checkbox"/>
2	나트륨	1200	mg	<input type="checkbox"/>
3	탄수화물	47	g	<input type="checkbox"/>
4	당류	3	g	<input type="checkbox"/>
5	지방	10	g	<input type="checkbox"/>
6	트랜스지방	0	g	<input type="checkbox"/>
7	포화지방	5	g	<input type="checkbox"/>
8	콜레스테롤	0	mg	<input type="checkbox"/>
9	단백질	5	g	<input type="checkbox"/>

3 신청 저장

질의응답(FAQ)

Q1. 품목제조보고서 영양성분을 입력하는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 식품영양성분 정보는 국민의 영양평가 및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 정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신제품 출시 등 연구·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식품영양정보를 국민에게 시기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제품 출시 속도, 유통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품목제조보고서 영양성분 정보를 입력토록 동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업계에서 제공한 영양성분 정보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로도 제공하여 활용 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Q2.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와 품목제조보고서 상의 영양성분 정보에 차이가 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 품목제조보고서 입력한 영양성분 정보와 유통되는 제품의 영양 표시 정보는 제공 시점, 단위 환산 등을 고려할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시정보 위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시 제품의 영양성분 검사 성적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 영양성분 검사 성적서는 품목제조보고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품목제조보고서 제품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시 영양성분 정보를 늦게 제출할 수 있나요?

-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영양성분 정보도 동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5.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시 영양성분 정보를 반드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하는 식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7월 1일부터 제출하는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시 영양정보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23년 7월 1일부터 신규 품목제조 보고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은 영양성분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참고 4]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참고
-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가 개정(제1724호, 2021.8.24.)됨에 따라 영양표시 시행일이 다를 수 있어, 식품유형별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참고 5] 확인

Q6. 품목제조보고서 작성 시 영양성분 정보는 100g 단위로 환산해야 하나요?

- 품목제조보고서 영양성분 정보는 ①총 내용량당/②100g당/③100mL당/④단위 내용량당 중 한 가지를 직접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한편, 식약처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수집하여 100g(mL) 단위로 환산하여 공공데이터로 제공합니다.
- 따라서, 총 내용량 및 단위 내용량으로 입력된 정보를 100g(mL) 단위로 환산할 경우 오차 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100g(mL) 단위로 입력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Q7. 총 내용량과 100g당 혹은 총 내용량과 단위 내용량 등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 병행하는 영양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하나요?

- 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정보는 ①총 내용량당/②100g당/③100mL당/④단위 내용량당 중 한 가지를 직접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선택 사항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입력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량은 ①총 내용량당 / ②100g당 / ③100mL당 / ④단위 내용량당 중 1개를 선택하고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 (① 선택) 총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영양성분 함량은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입력
 - (② 또는 ③ 선택) 총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영양성분 함량은 100g(mL)을 기준으로 입력
 - (④ 선택) 단위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총 내용량 입력 후 단위(g 또는 mL) 선택, 영양성분 함량은 단위 내용량을 기준으로 입력

Q8. 한가지 제품(하나의 품목제조보고 등록)에 여러 종류의 판매 단위(용량)가 있는 경우 대표 제품의 판매 단위(용량)에 대해서만 영양성분 정보를 기재해도 되나요?

- 예. 대표 제품 한 가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입력하면 되고, 대표 제품을 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 단위로 선택하여 영양성분 정보 입력을 권장드립니다.

Q9. 대표 제품의 판매 단위로 입력 시 단위 환산으로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 정보 입력 제도는 유통되는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공공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허용 오차 범위는 없으며, 행정처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제품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 제품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함량 단위와 품목제조보고서 작성 시 자동으로 표출되는 영양성분 함량 단위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품목제조보고서 작성 시 영양성분 탭에서 영양성분명을 검색한 후 선택하면 영양성분 단위가 자동으로 표출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 따라서 제품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단위와 품목제조보고서 시 자동 표출된 영양성분 단위를 확인하신 후 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환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Q11. 품목제조보고서 작성 시 식품 등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정보를 그대로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면 표시하는 영양정보와 차이가 있지만 실제 분석값을 기재해야 하나요?

- 식품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분석한 함량 중 어느 값을 입력하여도 관계없으나, 가급적 실제 분석한 함량 값 입력을 권장드립니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는 '○○g(또는 mg) 미만' 또는 '0'으로 표시가 가능하나, 품목제조보고서 시 영양성분 정보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숫자로만 입력이 가능하므로 실제 분석한 함량 값 입력을 권장드립니다.
- 참고로 실제 함량 값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탄수화물, 당류, 트랜스지방산, 콜레스테롤, 단백질은 '~미만' 등의 한글을 포함하는 표시 가능 ⇒ 한글을 포함하는 함량 값은 0으로 표시 가능한 값과 해당 수치 간 차이의 1/2 값으로 입력

<영양성분별 세부 표시사항에 따른 입력 예>

영양성분	단위	표시방법	비고	'~미만' 입력 값
열량	kcal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 표시	5kcal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나트륨	mg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mg 이상 120mg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120mg 초과 시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0mg 단위로 표시	5m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탄수화물 /당류	g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표시 가능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표시값)1g 미만→ (입력값)0.75g* * 0.5~1g의 중간 값
지방	g	포화지방산 및 트랜스지방산을 구분하여 표시 5g 이하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단, 트랜스지방산은 0.5g 미만일 경우 "0.5g 미만"으로, 0.2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	트랜스지방산 (표시값)0.5g 미만→ (입력값)0.35g* * 0.2~0.5g의 중간 값
콜레스테롤	mg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표시	2mg 이상 5mg 미만은 "5mg 미만"으로, 2m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표시값)5mg 미만→ (입력값)3.5mg* * 2~5mg의 중간 값
단백질	g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표시값)1g 미만→ (입력값)0.75g* * 0.5~1g의 중간 값

Q12. 영양표시 대상 영양성분(9종) 정보 이외에 강조 또는 강화표시 영양성분이나 제품에 추가적으로 표시한 영양성분도 품목제조 보고 시 입력해야 하나요?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 영양성분(열량 등 9종) 정보는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강조 또는 강화 표시 영양성분이나 제품에 추가로 표시한 영양성분 정보는 자율적으로 입력 가능하며, 동 제도의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제품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정보는 모두 입력하실 것을 권장(부탁)드립니다.

Q13. 영양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이 제공된 129종의 영양성분명에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원료는 제공된 129종 중 해당되는 영양성분 함량으로 환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비타민 B2 인산에스테르나트륨 사용 ⇒ 비타민 B2 함량으로 환산 입력

Q14. 품목제조보고서 승인을 받은 이후 영양성분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다시 제출해야 되나요? 영양성분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해야 하나요?

- 영양성분 정보는 품목제조보고 변경 사항(①제품명, ②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③소비기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변경 신고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영양성분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정보로 입력하여 현행화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15. 제도 시행(2023.7.1.) 이전에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고 생산된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는 언제까지 입력해야 하나요?

- '23년 7월 1일 이전에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하고 생산·유통 중인 제품은 영양성분 정보 입력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본 제도의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영양성분 정보 입력을 권장드리며, 입력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Q16. 품목제조보고서의 영양성분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연동 또는 업데이트 되는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품목제조 변경 보고 후 변경된 영양성분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즉시 연동되어 반영되나요?

- 2023년 품목제조보고 시 수집된 영양성분 정보는 표준화하여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DB' 및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할 계획입니다.(23년 1월 예정)
- 2024년부터는 분기별 1회 공개할 계획이나,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Q17. 하나의 포장 단위에 여러 종류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구성 제품을 일괄하여 하나의 영양성분 정보로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영양성분 정보를 품목제조보고 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 구성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포장지에 제품별로 표시하는 경우, 구성 제품의 내용량을 합산하여 총내용량을 입력하고, 영양성분 함량도 총내용량을 기반으로 합산한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Q18. 식단형 식사관리식품과 즉석섭취식품 중 밥과 반찬이 조합되거나 함께 포장되어 한끼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영양성분 정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과 즉석섭취식품 중 밥과 반찬이 조합되거나 함께 포장되어 한끼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을 모두 일괄 기재하여 하나의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2023년 7월 1일 시행)
- 이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한 원재료 전체 중 일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영양성분 정보는 원재료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 정보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